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5년 7월 13일
제 안 자 : 이범윤 의원외

□ 제안이유

○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특정 직위로 한정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,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대상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

□ 주요내용

○ 안 제3조제3항제3호 “충청북도 소속 공무원(장애인복지 관련 담당국장)”을 “충청북도 소속 공무원”으로 함

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안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

조 문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구성) ①~②(생략)	**제3조(구성)** ①~②(제정안과 같음)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	③..... ....
1.~2.(생략)	1.~2.(제정안과 같음)
3.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(장애인복지 관련 담당국장)	3.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